##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08

발의연월일: 2020. 12. 14.

발 의 자:김남국·김경만·김승원

소병철 · 신정훈 · 양원영

오영환 · 유정주 · 윤미향

이광재 · 임오경 · 홍기원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서에서 원고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범죄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소송절차와 판결서에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기록 등으로서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62조제5항 신설).
- 나. 법관은 직권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서에 원고의 성명과 주소만을 적을 수 있고,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판결서에 원고의 영업소, 사무소, 근무장소를 주소로 하거나 원고가 상대방의 동의를얻은 다른 사람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8조제5항 신설).
- 다. 법원은 직권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할 때,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5조 및 제273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에 대한 기록으로서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⑧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8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판결한 법관은 직권 또는 원고 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에 원고의 성명과 주소 외의 사항을 적지 아 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관은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원고의 주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적을 수 있다.
- 1. 원고의 영업소, 사무소 또는 근무장소

- 2. 원고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 외의 주소등으로써 해당 주소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판결서의 원고 주소로 동의를 얻은 장소 (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한다)
- ⑥ 법관이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판결서에 원고의 주소를 적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따라 원고의 주소는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 ⑦ 제5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 원규칙으로 정한다.
- ⑧ 제6항에 따라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원고의 주소를 제185조에 따라 변경된 송달장소로 본다. 이 경우 제5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소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184조에 따른 송달 영수인으로 본다.

제25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 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소장 부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 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제27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255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
서의 교부청구) ① ~ ④ (생	서의 교부청구)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⑤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
	하는 소에 대한 기록으로서 당
	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
	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
	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
	호조치를 할 수 있다.
<u>⑤</u> · <u>⑥</u> (생 략)	<u>⑥</u> ⋅ <u>⑦</u>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u>&lt;신 설&gt;</u>	⑧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
	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u> 정한다.</u>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신 설>

<신 설>

<신 설>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경우 판결한 법관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에 원고의 성명과 주소 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관은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원고의 주소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로 적을 수 있다.

- 1. 원고의 영업소, 사무소 또는 근무장소
- 2. 원고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 소 외의 주소등으로써 해당 주소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터 판결서의 원고 주소로 동의를 얻은 장소(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한다)
- 6 법관이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판결서에 원고의주소를 적는 경우에는 판결서에에 따라 원고의주소는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 ① 제5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⑧ 제6항에 따라 주소가 변경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 법 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략)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 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후

되는 경우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원고의 주소를 제185조에 따라 변경된 송달장소로 본다. 이 경우 제5항제2호에 따라 해 당 주소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184조에 따른 송달 영수인으 로 본다.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 --------. <u>이 경우</u> 법원 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신 청에 따라 소장 부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② (현행과 같음)

있다.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u>단 신설&gt;</u>	우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에 관
	하여는 제255조제1항 후단을 준
	<u>용한다.</u>